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우리시의 도시브랜드 슬로건 의 새로운 의미가 재정립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상징물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브랜드 슬로건에 관한 사항(안 별표4)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현행화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상징물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도시브랜드슬로건, 예스구미타워, 마스코트,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휘장, 도시브랜드슬로건, 예스구미타워, 마스코트,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 장 : [별표 1]
2. 마스코트, 캐릭터 : [별표 2]
3. 시 화(市花) : 개나리 [별표 3]
4. 시 목(市木) : 느티나무 [별표 3]
5. 시 조(市鳥) : 까 치 [별표 3]
6. 도시브랜드슬로건 : [별표 4]
7. 예스구미타워 : [별표 5]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장
상징물을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구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
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6호, 제7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
에는 구미시 이미지개발기본 편람 및 응용 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
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승인사항 변경
시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 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구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상징물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3. 구미시의회장이 추천하는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징물 관리 업무담당관(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상징물인 휘장, 도시브랜드슬로건, 예스구미타워 또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시장상징물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구미시 상징물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사용 승인(변경)신청서

신 청 인	상호(단체명)			
	대표자(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첨부서류>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구미시 상징물 조례 [별표 1]

그림 1. 휘장

기본형



<심벌마크의 의미>

구미시의 심벌마크는 첨단 산업도시를 나타내는 핵과 찬란한 문화를 나타내는 다른 핵을 두 개의 원으로 표현하여 끝없이 질주하는 무한가능성을 나타내는 뫼비우스의 띠로 연결, 첨단도시와 문화가 공존하여 끝없이 발전하는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또한, 활발하게 움직이는 전자운동을 우주궤도의 형상으로 표현, 세계적인 첨단 전자산업을 리드하는 구미의 무한한 힘을 상징한다.

그림 2. 작도법(그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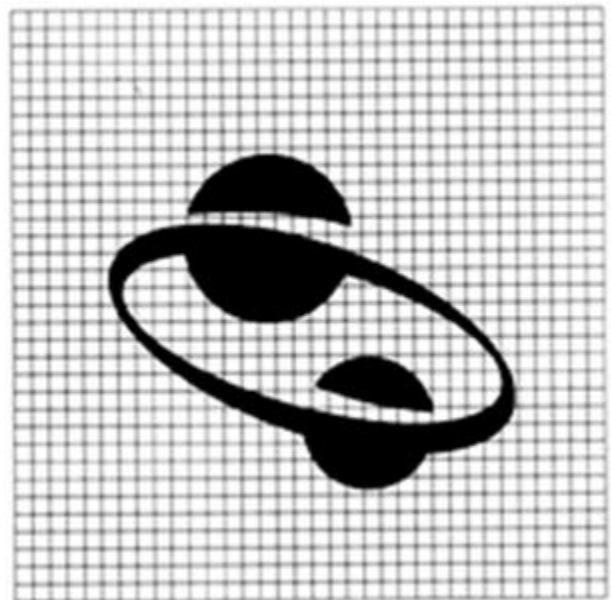


그림 3. 색상



KUMI-Blue / PANTONE 286C

■ 구미시 상징물 조례 [별표 2]

그림 1. 마스코트

(1)기본형



<마스코트의 의미>

마스코트는 친근하면서도 역동적인 이미지의 구미시를 대변하여 각종 행사나 캠페인 전개, 홍보 메시지 전달에 있어 보조적 역할을 하는 구체적 상징물이다. 마스코트는 10여종의 응용 동작을 개발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동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개발된 형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CI관리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색상 적용시에는 본 항에 제시된 Full Color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의해 연속동작의 표현을 하고자할 때에는 별도의 감수를 받아야 한다.

그림 2. 캐릭터 A형



그림 3. 캐릭터 B형



그림 4. 색상



KUMI-Blue / C100% + M70%

KUMI-Yellow / M30% + Y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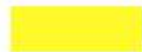
KUMI-Orange / Y91% + M70%

KUMI-Black

■ 구미시 상징물 조례 [별표 3]

구 미 시 상 징 물

1. 시화 : 개나리



PANTONE 106C/Y90%



PANTONE 116C/M40%+Y100%



PANTONE 227C/C30%+M100%+Y30%

2. 시목 : 느티나무



PANTONE 116C/M40%+Y100%



PANTONE 327C/C100%+M10%+Y50%

3. 시조 : 까치



PANTONE 327C/C100%+M10%+Y50%



BLACK

■ 구미시 상징물 조례 [별표 4]

구미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1.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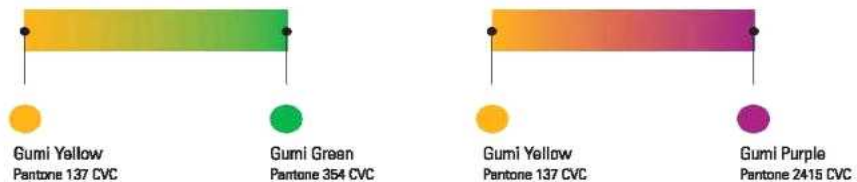
도시브랜드슬로건 설명

구미시의 도시브랜드 YES GUMI는 「당신(시민)과 함께라서 신나는 스마트 구미」라는 의미로 시민과 함께 모두의 행복한 미래 100년을 열어가는 구미의 비전을 나타낸다. Y E S 각각의 이니셜은 Your City 당신으로부터 시작하는 행복한 변화의 시작, Exciting City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 신나는 Yes 구미, Smart City 사람 중심의 스마트 혁신으로 일자리 넘치는 풍요로운 도시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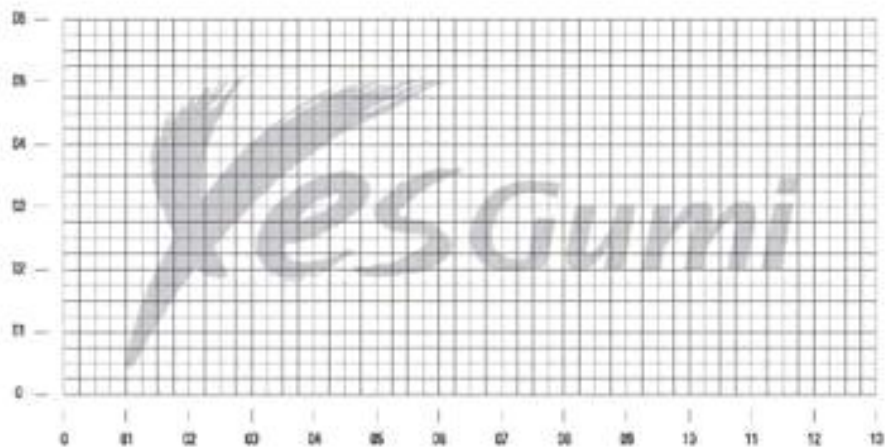
도시브랜드슬로건 최소 사용규정



색 상



2. 그리드



■ 구미시 상징물 조례 [별표 5]

<예스구미타워>



소 관 부 서		홍보담당관
입 안 자	담 당 관	윤 희 영
	담 당	이 연 경
	담 당 자	정 혜 진 (480-6726)